용산 투웨니퍼스트99 오피스텔 분양광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용산 투웨니퍼스트99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분양홍보관 관람을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 할 예정이며 오피스텔 홍보관 내 분양 상담전화(☎1533-4988)로 사전 예약 후 관람 바랍니다.

-분양홍보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시행조치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으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분양홍보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분양홍보관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전신소독기, 손 소독제, 비 접촉 체온계 등을 통한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분양홍보관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등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용산 투웨니퍼스트99 내 분양 상담전화(☎1533-4988)등을 통해 분양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 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용산투웨니퍼스트.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게시 분양광고일(2022.03.23.)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10%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03.22,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03.22, 광고일과 다름)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 **분양권 전매** : 본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100실 미만의 규모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03월 28일(월)	03월 31일(목) 16:00시 이후	04월 01일(금) ~ 04월 02일(토)(10:00~18: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분양홍보관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용산 투웨니퍼스트99 분양홍보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상가 1층 1호)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서울시 용산구 2022 - 건축과 - 분양신고 – 제1호(2022.03.22.)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서울시 용산구 2019 - 건축과 – 신축허가 - 98호(2019.11.01.)-허가변경(2021.10.26.)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46-5외 7필지(6, 7, 11, 16, 17, 18, 19)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692.90㎡(오피스텔 : 620.54㎡)
- 건축물 연면적 : 5,954.11㎡(오피스텔 : 5,449.30㎡)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1층(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 방재실, 통신실, 계단실/ELEV.홀/복도, 화장실), 지상1층(제1종 근린생활시설, 계단실/ELEV.홀/복도, 장애인화장실, 관리실, 주차타워), 지상2층(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19층(오피스텔 99실), 옥탑층(ELVE.실, 계단실)
- 공급규모 : 지하 1층 ~ 지상 19층 1개동 중 오피스텔 총 22실
- 주차대수 : 자주식 3대, 기계식 70대

■ 내진설계 등급 :내진등급 1등급, 진도 MMI Ⅷ등급(최대지반가속도 : 0.2039g)*「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입주예정일 : 2023년 07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타 입	공급호실(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A	16	37.93	17.74	55.67	2.50	58.17	6.63
C	6	49.52	22.77	72.29	3.27	75.56	8.65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서울특별시 용산구)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호실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타 입	공급호실(수)	신청유형 호실		비고
		거주자 우선분양	일반 분양	
A	16	1	15	분양신고일(2022.03.22, 광고일과 다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함.
C	6	1	5	

■ 공통사항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상기 분양금액은 각 용도별, 호실별, 층별 및 향별로 다르오니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통합),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상기 호실당 계약면적에는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등의 공유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호실별로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납입일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한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공사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고지 및 안내가 없는 한 상기 예정일자에 따라 중도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대금 납입일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정으로 합니다.
- 공유대지는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배분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대지지분은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하고 분양계약서와 공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적용된 제곱미터당 분양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가감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전용면적과 대

지지분의 소수점 이하의 변동 및 공용면적의 차이에 대하여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공동사용부분(전기실, 기계실, 주차장, 계단실, 복도 및 화장실 등)은 전용면적비로 배분하고 각 호실별·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그리고 공용면적은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적의 조정하였습니다.
- 주차타워 면적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대수를 적용하여 각 시설의 전용면적비로 분개하였으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도로 교통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니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사오니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동법」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동법」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전매에 대한 사항은 추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련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전매는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세무상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광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준용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실, 원)

타 입	층	공급호실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계약시	1회(20%)	2회(10%)	3회(10%)	4회(10%)	입주시
								2022.05.25	2022.07.25	2022.10.25	2023.01.25	
A	3~4	6	495,544,800	472,232,000	47,223,200	1,015,000,000	101,500,000	203,000,000	101,500,000	101,500,000	101,500,000	406,000,000
	5~7	5	497,009,200	473,628,000	47,362,800	1,018,000,000	101,800,000	203,600,000	101,800,000	101,800,000	101,800,000	407,200,000
	8~9	3	498,473,600	475,024,000	47,502,400	1,021,000,000	102,100,000	204,200,000	102,100,000	102,100,000	102,100,000	408,400,000
	12	1	500,426,500	476,885,000	47,688,500	1,025,000,000	102,500,000	205,000,000	102,500,000	102,500,000	102,500,000	410,000,000
	16	1	501,403,500	477,815,000	47,781,500	1,027,000,000	102,700,000	205,400,000	102,700,000	102,700,000	102,700,000	410,800,000
C	3~4	2	620,457,500	588,675,000	58,867,500	1,268,000,000	126,800,000	253,600,000	126,800,000	126,800,000	126,800,000	507,200,000
	6~7	2	622,904,400	590,996,000	59,099,600	1,273,000,000	127,300,000	254,600,000	127,300,000	127,300,000	127,300,000	509,200,000
	10	1	626,329,400	594,246,000	59,424,600	1,280,000,000	128,000,000	256,000,000	128,000,000	128,000,000	128,000,000	512,000,000
	14	1	629,265,900	597,031,000	59,703,100	1,286,000,000	128,600,000	257,200,000	128,600,000	128,600,000	128,600,000	514,400,000

Ⅱ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 10%를 분양신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

에 우선 선정합니다.(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게시 분양광고일(2022.03.23.)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되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03월 28일(월)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03월 31일(목) 16:00시 이후	04월 01일(금) ~ 04월 02일(토) (10:00~18: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타입)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용산 투웨니퍼스트99 분양홍보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상가 1층 1호)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수협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 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타입 공통	3,000,000원 (금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수협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및 법인 등을 제외하고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구비사항</th></tr>
<tr><td rowspan="4">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수협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본인확인 증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도장</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수협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 법인 명의)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td></tr>
</table>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수협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홍보관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분양광고일(2022.03.2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분양홍보관과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시설의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2년 03월 31일(목) 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호실의 당첨자를 선정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계약금 납부 완료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 후 계약 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 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잔여 호실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계약 장소 미 방문,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정 당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기타사항	• 한국부동산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2년 04월 01일(금) ~ 2022년 04월 02일(토)	10:00~18:00	**용산 투웨니퍼스트99 분양홍보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상가 1층 1호)**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분양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수협은행	1010-2135-1733	㈜무궁화신탁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을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입금(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고 홍보관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사항
본인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 입금확인서류(무통장입금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본인발급용)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등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주민등록 초본 - 거주자 우선 분양 당첨자의 경우
법인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 입금확인서류(무통장입금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및 법인 인감증명서(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법인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지참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구비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본인발금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분양홍보관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분양광고일(2022.03.2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계약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분양 합니다.

•청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정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공제합니다.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분양계약서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샘플 호실, 각 타입별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층·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명칭, 호수, 단지 조경,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 색채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정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호실에 대하여는 면적, 분양금액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과태료 등의 대납이나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중도금 대출기관은 분양사업자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금리 및 금융기관 선정 등 대출기관 선정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금액 : 계약금을 완납한 계약자에 한하여, 중도금대출이 가능할 경우 총 분양대금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합니다.(대출규모는 정부 정책 및 대출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금 및 대출이 알선되지 않는 중도금, 잔금은 계약자 본인 자금으로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조건은 정부 및 금융기관의 규제 및 정책변화와 시장환경의 변화, 계약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중도금 납부의무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또는 정부시책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중도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 1인 2실 이상의 중복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대출 불가 등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대출관련 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시행사에서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납부할 이자 및 원금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사업관계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중하게 청약,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삼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축소 또는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관계자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기타 계약자안내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을 완납한 후 전매가 가능하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매제한 내용을 확인한 후 법률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권리·의무승계를 하여야 하며, 사업관계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사업관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승계는 무효로서, 사업관계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②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②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승인신청은 사업관계자에 대한 채무(연체 또는 유예된 분양대금의 완납 포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 분양목적물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양도인 및 양수인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사업관계자의 대출기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시 "수분양자"는 본 물건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반 권리에 대하여 양수인(점유자 포함)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이를 확인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본 계약에

따르는 포괄적 권리·의무가 승계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설령 사업관계자가 권리·의무 승계서류를 수령하거나 직인을 날인하였더라도 이는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며, 단지 권리·의무승계 관련 신청서류를 수령하였음을 의미할 뿐이므로 전매제한과 관련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한(할) 모든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 등 모든 책임과 비용은 "수분양자"와 양수인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제기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사업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지정된 일자에 사업관계자가 지정한 장소로 내방하여 기명날인한 후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전매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전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관계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물건 취득 인정 시(공급대금의 90% 이상 납부한 경우) 권리양도(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준공예정일 2023년 6월 예정 / 입주예정일 2023년 7월 예정

-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행정명령, 관련법령의 제정/개정, 주요질병 발생(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따른 입주지연 보상금액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전점검 안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의2에 의거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분양관리신탁 고지사항

- "분양사업자"는 상기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주)무궁화신탁과 분양관리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대금은 (주)무궁화신탁에서 관리한다.
- "(주)무궁화신탁"은 본 사업의 대리사무 신탁사로서 "분양사업자"로부터 위임받는 자금관리업무, 분양계약사무 대리업무인 분양계약서 날인, 분양계약서 보관 등 업무를 수행하며, 분양계약서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사업주체인 "분양사업자"에게 있으며 "(주)무궁화신탁"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주)무궁화신탁"이 수분양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하여 주는 경우에도 같다.)
- 매도인인 "분양사업자"가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공사"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계약자(수분양자)"는 이의하지 않는다.
-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사업자"에게 납부한(할) 분양대금 총액을 "분양사업자"가 "(주)무궁화신탁"에게 분양관리 신탁계약에 따라 양도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주)무궁화신탁"은 본 사업의 자금관리(분양수입금 수납 및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하며,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분양사업자"가 부담한다.
- "(주)무궁화신탁"은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

V 기타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상담 등은 청약(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분양광고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시행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민원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지체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호실별 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인지하고 계약하기 바

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인 호수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샘플 호실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분양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카달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분양홍보관 설치 타입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의 변경은 오피스텔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및 도로교통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관련규정에 의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보전한 뒤 회사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 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외벽의 줄눈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시행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일조 수인한도 불만족 호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조 수인한도 용어 정의 : 동지일 기준 09~15시 중 주요 개구부(거실)의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08~16시 중 주요 개구부(거실)의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인 경우

- 샘플 호실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실제 공사 시 KS 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주변 건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된 내용을 임의 제작한 것으로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에 표현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분양홍보관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설치될 예정입니다.
- 분양홍보관 내 샘플 호실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달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사진, 그림 포함) 및 분양홍보관 내 비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 장애, 분진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본 사업부지 인근 단지(블록)의 개발 및 단지 내 오피스텔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관계기관의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후 세법이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 및 이메일주소((세금)계산서 수령처)를 반드시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통하여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미환급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관련

- 공개공지가 설치되는 경우,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펜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인의 통행 및 출입이 가능하므로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재료의 동등 수준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서울시 빛 공해 심의내용에 따라 경관조명 계획 유무가 결정될 예정이며, 경관조명이 설치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 호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 단지 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품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민원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내 공개공지 및 조경물, 외벽 사인물이나 홍보물은 사용승인 이후 소유자가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입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단지 내·외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호실에서 조망될 수 있습니다.

■ 공동설비 및 시스템

-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하 시설물이나 계단실 등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된 설비 시설물(냉각탑, FAN 등), 엘리베이터 운행 등에 의해 일부 호수는 소음, 진동 및 전파방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위치 및 수량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때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의 사유와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명칭, 외부색채, 옥상조형물, 옥상정원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서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 외부에 잔디, 식재, 시설물 등이 설치되는 경우, 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소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등의 사정에 따라 동질, 동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바닥, 벽, 천장의 가구로 가려지는 비노출 부분은 최종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과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경관조명 및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제 공사 시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방, 아트월, 화장실 등)
- 창호의 형태 및 프레임 두께 등은 추후 실제 공사 시 현장 입찰에 의해 결정되며, 분양홍보관 설치사양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시공됩니다.
- 분양홍보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 시설물의 마감재료,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속도, 탑승 위치 등은 건축허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분양홍보관과 카달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모형 포함),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 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관련

- 호실 내에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의 유효크기는 관련규정 및 법규에 따라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호실이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의 내용은 타입별·호실별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관에서 차이점을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에 따라, 그리고 같은 타입이라도 호실에 따라, 내·외부창호,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크기, 구성, 형태,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호실별 치수에는 천장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층 바닥에 옥상 정원이 설치되는 경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호실에 소음,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14년 12월 3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으로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방식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목적물의 대지지번은 필지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대출은행의 업무상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통신시설 신규 가입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청약신청자는 본 분양광고문의 제반 유의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구분	분양사업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대리사무 신탁회사
업체명	전대석외 3명	주식회사 글로벌대명	㈜온누리부동산컨설팅	㈜무궁화신탁
법인(사업자)등록번호	(881-07-01426)	110111-3368994	110111-4707711	110111-286741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글로벌대명과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180035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53-5, 10층(염창동, 대명투웨니퍼스트)
- 사업 방식 : 분양관리신탁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46-5외 7필지(6, 7, 11, 16, 17, 18, 19)
- 공급대상물의 지목 : 대
- 공급대상물의 용도 : 지하1층(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 방재실, 통신실, 계단실/ELEV.홀/복도, 화장실), 지상1층(제1종 근린생활시설, 계단실/ELEV.홀/복도, 장애인화장실, 관리실, 주차타워), 지상2층(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19층(오피스텔 99실), 옥탑층(ELVE.실, 계단실)
- 공급대상물의 규모 : 지하 1층 ~ 지상 19층 1개동 중 오피스텔 총 22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 해당 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여부 : 상대보호구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 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 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 등기
- 시공업체의 명칭과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 시공업체(주식회사 글로벌대명)/분양대행사((주)온누리부동산컨설팅)
- 공급대금의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명칭 및 등록사업자와의 관계 : 등록사업자와 분양관리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무궁화신탁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회사의 명칭 : ㈜무궁화신탁

■ **분양홍보관 위치 및 분양안내**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상가 1층 1호 (전화 : 1533-4988)